[사 건 명] 행심 2017 - 41

#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중학교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9.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특별교육 5일 이수 등』 처분을 취소하고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018.1.20.까지), 사회봉사(3일),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4시간)변경하여 처분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9.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가해에 따른『특별교육 5일 이수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 개요

가. 2017년 3월경 □□□, ◉◉◉, ◇◇◇가 ○○○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고 ○○○이 자신의 친구들을 페이스북으로 소개 시켜주었고 이후 계속 연락이 잘 되지 않아 ◇◇◇ 포함 3명의 학생들이 그 남자친구들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면서 이에 ○○○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라 하자 ○○○이 “속여서 미안”이라고만 대답하였고 이후 □□□, ◉◉◉, ◇◇◇와 ○○○ 관계가 악화되었음

나. 이후 페이스북상에서 서로 말싸움을 하고 저격글을 올리는 등의

언쟁이 있었고 학생들 사이의 일이 반 친구들에게 알려지면서 사이가 더욱 악화되고 ○○○은 다른 반 친구와 놀거나 반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음

다. 이후 ▷▷▷과 ○○○ 사이에 언쟁 사건이 발생하면서 ○○○은 청구인 및 관련 친구들이 자신에 대한 소문을 내고 다녀 발생한 일이라 하여 이 일과 관련하여 ○○○ 모(母)가 학교에 방문하였고 3명의 학생이 공개 사과문을 작성하여 반에서 읽었으며 추후 잘 지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음

라. 2017년 2학기 시작 후에도 청구인, ◉◉◉, □□□, ○○○은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고 ○○○을 계속 왕따시킨다 판단한 ○○○의 모(母)가 긴급 보호조치를 요구하며 2017. 9. 11. 학교폭력사안으로 신고 접수

마. 2017. 09. 15.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한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됨

바. 2017. 09. 2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5일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5시간 처분 조치함

## Ⅱ.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한다.**

가. 사건의 발단이 된 남자친구들 소개에 관한 페이스 북 사건 때 청구인은 피해학생을 향한 언어폭력이나 사이버폭력(저격글 등)을 하지 않았다.

나. ○○○을 왕따 시켰다고 하는데 청구인은 화해를 주도하면서 관계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였고 ○○○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계속하여 거절하였으며 청구인 외 2명을 제외하고도 학급에는 약 30여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 책임을 청구인이 다 받기는 억울하다.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당일 오후 5시30분에 개최된다 하여 5시부터 대기하였고 청구인은 밤 11시 15분까지 기다렸고 밤 11시경부터는 모든 교실에 소등타이머가 설치되어 학폭위가 열리던 교실도 불이 나간 상태에 휴대폰 후레쉬를 몇 개 켜놓은 상태에서 진행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회의를 진행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 Ⅲ.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의 심리상태를 보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며 가·피해학생에게 충분한 의견청취를 통하여 대립되는 부분에 관하여 참고하여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은 학폭위 개최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학폭위 당일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충분한 의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회의시간이 길어졌고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할 시

간이 되자 학교의 자동전원차단장치로 인해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청구인 부(父)에게 내일로 연장하여 다시 개최하자고 제안하자 청구인이 계속하여 진행하기를 원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하였고 11시 15분부터 12시 30분경까지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 학폭위 위원들이 심의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Ⅳ. 청구인의 보충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반박 주장한다.**

가. 공개 사과문은 ○○○ 모(母)가 3명의 학생과 어머니들을 불러 자기가 원하는대로 반성문을 쓰지 않으면 학폭위 신청과 소년원까지 운운하여 부당하고 억울하였지만 학폭위를 신청 안하고 마무리 하는게 좋을 거 같아 응한 것일 뿐인데 이를 빌미로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다.

나. 학교측에서 학폭위 회의를 연기하자고 했는데 청구인 측에서 원하여 계속 진행하였다고 하였는데 정전인 상태를 해소하고 회의를 진행하자고 한 것이지 얼굴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자는 의도는 아니였다.

## Ⅳ.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처분 근거 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2. 판 단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자료 및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구술심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같이 가해학생으로 인정되어 처분을 받은 □□□, 박민정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 학교폭력의 심각성 2점, 지속성 3점, 고의성 2점, 반성정도 1점, 화해정도 1점을 받아 각 9점에 해당하여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 사회봉사 3일, 제2호 2개월간 접촉금지, 제3항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 반면, 청구인은 위 심의 결과, 반성정도 2점, 화해정도 2점을 받아 11점에 해당하여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5일, 제2호 2개월간 접촉금지, 제3항 부가적 특별교육 5시간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3) 그리고, 위 심의 당시 청구인의 순서가 가장 마지막으로 실시 되었는데 해당 학교의 경우 밤 11시경이면 학교 전체에 전등이 나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심야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심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피해 학생을 향한 언어폭력이나 사이버폭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7. 9. 20. 신송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다른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에 대해 피해를 입힌 것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계속 거절하여 화해를 하기 어려웠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 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위원회 회의 당시 위원들이 청구인에 대해 반성정도와 화해정도를 다른 가해 학생보다 각 1점씩 더 산정한 이유가 피해 학생이 마음속으로 청구인에 대해 반성 여지를 덜 느끼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 중 하나인 롯데월드 체험학습 건과 관련해서 보면 당시 청구인이 다른 가해 학생 두 명과 달리 롯데월드 체험학습을 간 이유가 그 동안 롯데월드에 가보지 못해서 간 것인데, 청구인도 다른 가해 학생들처럼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을 볼 때, 청구인이 피해 학생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거나 화해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다른 가해 학생들과 차별해서 처벌할 이유는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이 부당한 점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당일 청구인에 대한 심의가 밤 11시가 넘어 이루어졌고 더구나 학교 전등이 꺼진 상태에서 참석한 위원들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을 켠 상태에서 심의가 진행되어 무리

하게 회의를 진행한 절차가 있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당시 피해 학생측과 가해 학생측의 관련자가 많아 회의 진행이 길어졌고 충분한 의견 기회를 제공하다 보니 마지막 차례가 된 청구인의 경우 밤 늦게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고 학교측에서 청구인측에 내일 계속 진행하자고 하자 청구인측에서 당일 계속 진행할 것을 원하여 심야까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측에 특별히 불리한 점은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상 문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4) 따라서, 청구인을 다른 가해 학생과 차별해서 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에 다른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과 동일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다시 처분하기로 한다.

##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처분에 대해 이를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해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는 그대로 하고, 4호 사회봉사 3일과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 처분으로 일부 변경 처분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